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중앙행정기관 등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이 법에 따른 지원 특례를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이전기관 중 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간주함(안 제4조).
- 비수도권에서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이전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전규모·시기 및 비용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전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전규모·시기 및 비용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부산광역시장의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한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임대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이주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주택자금융자, 전·입학 편의 제공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1조).
- 이주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II. 검토의견

1. 조례 제정 주체 수정(안 제10조제3항)

- 안 제10조제3항은 해양특화지구 내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단지 및 공동주거시설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그런데 안 제10조제3항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주체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인 ‘부산광역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 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¹⁾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음.
- 이에 조례 제정 주체를 “부산광역시”로 수정하는 의견을 해양수산

1)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와 협의하여 마련함.

<안 제10조제3항에 대한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0조(해양 특화지구의 지정) ③ <u>부산광역시</u> 장은 해양특화지구에서 제2항에 따라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해양특화지구의 지정) ③ <u>부산광역시</u> 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특화지구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이주직원’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7조제2항)

- 제정안은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 등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2항 및 제6항), 이사비용과 이주지원비 지급, 자녀 학업 및 출산·양육 지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융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정주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해양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이주직원 자녀의 전·입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제정안에는 ‘이주직원’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주직원’ 또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으로 혼용되고 있으므로,
- ‘이주직원’을 ‘이전기관 또는 이전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 그 정의를 법문에 명확히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마련함.

<안 제7조제2항 등에 대한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7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이 <u>이주직원을</u>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7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이 <u>이주직원(이전기관 또는 이전기업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u> 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1조(전·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u>이전기관 및 이전기업</u> 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전·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u>이주직원 자녀의 전·입학</u>)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u>이주직원의</u>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전·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주택법」 제54조와의 적용관계 추가(안 제9조제2항)

- 안 제9조제2항은 이주직원들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주택 공급 기준은 원칙적으로 「주택법」 제54조²⁾를 따르고

- 2)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와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별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달리 정한 입주자모집의 시기를 포함한다)·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 ②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해당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해당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사업주체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건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60조에 따라 건설하는 건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이하 “마감자재 목록표”라 한다)와 건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항에 따른 건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2.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 그에 관한 정보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⑥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⑦ 사업주체가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⑧ 사업주체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표시·

안 제9조제2항은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나, 안 제9조제2항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³⁾와 달리 어떤 규정에 대한 예외인지를 분명히 규정하지 않아 법령 간 적용관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법령 상호간 체계 정당성 및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조항 간 적용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제2항에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를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해양수산부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마련함.

<안 제9조제2항에 대한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9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②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 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②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의 이주직원 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1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기업도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도심융합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연계 개정 감안 필요(안 제8조제1항)

- 안 제8조제1항은 국가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8조제1항>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9조(국유·공유재산의 감면 등) ① 국가는 「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4)에 따라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고, 해당 별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는데, 현재(2025. 11. 11. 기준) 안 제8조제1항의 국유재산특례 신설과 관련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제1항이 실효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나, 개정이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님. 이에 안 제8조제1항의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임을 감안하여 시행일 전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별표 개정을 통한 안 제8조제1항의 실효성 확보를 할 필요가 있음.

5. 기타 사항

- 그 밖에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의미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박 병 섭)